



instagram | korea_anti_doping_agency facebook | antidoping.korea
youtube | KADApplaytrue www.kada.co.kr blog | antidoping2006
02-2045-9898 02-2045-9800

05398)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43-64, 7~9층(성내동, 스퀘어100)

재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도 발간

국가대표도 몰랐던 도핑방지 이야기

도핑방지규정위반 사례집

KADA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OREA ANTI-DOPING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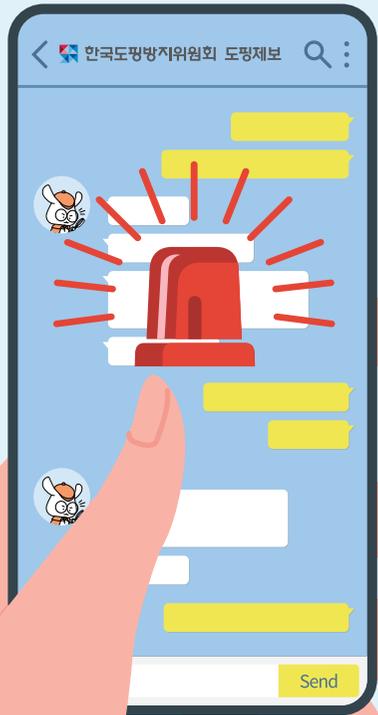




도핑방지 규정위반 사례집

도핑이 의심되는
선수, 지도자, 조력자 등을 알고 있는

제보자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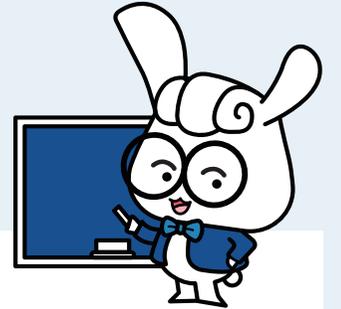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바로 제보하세요!

제보는 이곳으로!



안내문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이 스포츠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도핑방지규정 위반 상황 및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제재 사례 및 유의사항을 배포합니다.

이 사례집에서 다루는 사례 중 국내사례는 특정 선수를 지칭하지 않았으며 결과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또한, 이 사례집에서 발생한 사건에 부과되는 제재수준은 참고용이기에 향후 발생하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산정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CONTENTS



도핑방지규정위반 사례집

제1절

결과관리 개요

- 1. 결과관리 의의 05쪽
- 2. 결과관리 시행근거 05쪽
- 3. 국내 도핑방지규정 및 적용대상 05쪽
- 4.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른 결과관리 절차... 06쪽

제2절

결과관리 제재기준

- 1.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따른 제재 종류 07쪽
- 2. 도핑방지규정위반 제재기준 07쪽
- 3. 규정 위반 유형별 자격정지기간 09쪽

제3절

도핑방지규정위반 사례

- 1. 국내 도핑방지규정위반 사례 11쪽
- 2. 국외 도핑방지규정위반 사례 26쪽

제4절

금지약물 부작용과 주의사항

- 1. 주요 금지약물 부작용 39쪽
- 2. 약물 복용 전 주의사항 41쪽

제1절

결과관리 개요

1. 결과관리 의의

결과관리는 도핑방지규정위반 초기 검토부터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여 도핑 없는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의 기본적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 공정성을 확보하는 활동입니다.

2. 결과관리 시행 근거

결과관리는 「세계도핑방지규약」과 관련 문서인 「결과관리 국제표준」 및 「결과관리 국제표준 지침」 등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통일화된 결과관리 절차와 원칙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국내에서의 도핑을 근절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22일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2022년 3월 8일 개정 「한국도핑방지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국내 도핑방지규정 및 적용대상

국내 도핑관리 프로그램은 「한국도핑방지규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핑방지규정은 경기규칙과 같이 경기가 진행되는 조건을 규율하는 경기원칙이며 선수, 선수지원요원 및 기타 관계자는 경기참가의 조건으로 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한국도핑방지규정」은 적용대상을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합니다.

구분	적용대상
단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지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이하 "경기단체")와 그 산하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이하 "경기단체")와 그 산하단체
	한국프로축구연맹(상급단체인 FIFA, 대한축구협회가 세계도핑방지규약 수용)
개인	경기단체 등록선수과 선수지원요원
	도핑관리와 관련된 경기단체의 임직원

* 위 표는 주요 적용대상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명시된 단체와 개인에 국한하지 않기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③ **사건 정황:** 선수가 규정을 위반할 당시 고의 여부, 과실 수준에 따라 제재가 결정됩니다.

사건 정황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감면

- 선수가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이 면제되며 중대한 과실 또는 중대한 부주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이 감경될 수 있다.
- 단, 도핑방지규정위반 유형에 따른 기본 자격정지기간 산정 이후 과실 및 부주의 수준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감경을 고려한다.

④ **규정 위반 횟수:** 개인에 대해 총 3회의 제재기준 정하여 횟수별 제재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세 번째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영구 자격정지를 부과하여 위반이 중복될수록 엄격히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재기준 결정 예시



▶ (사례)

‘경기기간 중’ 금지되는 ‘**특정 약물**’을 복용한 선수가 ‘**경기기간 중**’ 도핑검사를 받아 소변 시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었음. **위원회는 선수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선수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첫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입**을 확인함.

- ① **규정 위반 및 약물 유형:** 선수 시료에서 검출된 금지약물이 ‘특정약물’인 경우 선수의 고의가 있으면 자격정지 4년, 고의가 없으면 자격정지 2년
- ② **사건 정황:** 선수가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추가 감경(건축-자격정지 2년)
- ③ **규정 위반 횟수:** 첫 번째 규정 위반인 경우 자격정지 가중사유 없음

▶ (결과) 선수에게 자격정지 2년 부과

3. **규정 위반 유형별 자격정지기간**

2021년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 첫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

도핑방지규정위반 유형		기본 자격정지기간
제13조 제1호	선수 시료에서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2년 또는 4년
제13조 제2호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하는 경우	2년 또는 4년
제13조 제3호	선수가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시료채취에 실패하는 경우	2년 또는 4년
제13조 제4호	선수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2년
제13조 제5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도핑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2년 또는 4년
제13조 제6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보유하는 경우	2년 또는 4년
제13조 제7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4년~영구
제13조 제8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경기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경기기간 외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외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하거나 투여를 시도하는 경우	4년~영구
제13조 제9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공모 또는 공모 시도	2년~영구
제13조 제10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 대상자와 연루되는 행위	1~2년
제13조 제11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관련 당국에 제보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2년~영구
제65조 제3항 제1호	남용약물을 경기기간 외에 섭취 또는 사용하였고 종목의 경기력과 무관했음을 증명할 경우	3개월

◆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 아래 기간 중 상대적으로 긴 기간

①	6개월
②	첫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하여 부과된 자격정지기간에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이 첫 번째 위반이었다면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
③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을 첫 번째 위반으로 가정할 경우 적용되는 자격정지기간의 두 배

◆ 세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 영구 자격정지

구분	분석 여부	순	사례 제목	위반 조항	페이지	
국내 도핑방지규정위반 사례	분석 사례	1. 의료진의 처방약을 성분 확인 없이 복용하여 발생한 자격정지				
		1-1	이석증 처방약에서 검출된 성분으로 제재받은 사건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 제1호, 제2호	11쪽	
		1-2	진통제로부터 검출된 성분으로 제재받은 사건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 제1호, 제2호	12쪽	
		1-3	감기약으로부터 검출된 성분으로 제재받은 사건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 제1호, 제2호	13쪽	
		2. 의약품이 아닌 성분 미상의 제품을 섭취하여 발생한 자격정지				
		2-1	성분 출처 미상의 한약 및 음식을 먹어 제재받은 사건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1항	15쪽	
	2-2	성분 출처 미상의 보충제를 먹어 제재받은 사건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 제1호, 제2호	17쪽		
	2-3	지인의 보충제를 빌려 먹어 제재받은 사건	한국도핑방지규정 제2.1항	18쪽		
	비분석 사례	3	선수가 금지약물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재받은 사건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 제6호	20쪽	
		4	자격정지 기간 중 팀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제재받은 사건	한국도핑방지규정 제79조	22쪽	
5		자격정지 기간 중 팀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제재받은 사건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 제8호	24쪽		
국외 도핑방지규정위반 사례	분석 사례	6	오염된 음식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어 제재받은 승마 선수	세계도핑방지규약 2.1항	26쪽	
		7	장기보관 시료 재분석으로 금지약물이 검출되어 제재를 받은 바이애슬론 선수	세계도핑방지규약 2.1항 2.2항	28쪽	
	비분석 사례	8	정당한 이유 없이 도핑검사를 거부하여 제재받은 수영 선수	세계도핑방지규약 2.3항 2.5항	30쪽	
		9	동료선수의 녹취로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받은 육상선수	세계도핑방지규약 2.2항	34쪽	
10	소재지정보 불이행에 대해 시스템 및 도핑검사관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제재받은 장애인테니스 선수	세계도핑방지규약 2.4항	36쪽			

사례 1-1

이석증 처방 약에서 검출된 성분으로 제재받은 사건

적용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 | 조치결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전국대회의 경기기간 중 선수 소변시료에서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금지약물 S4에 해당하며 경기와 무관하게 항상 금지되는 성분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성분이 선수의 체내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 선수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귀에 통증을 느꼈고 여러 병원의 진료 끝에 **이석증 진단과 약을 처방받았**었어요. 당시 의료진에 제가 ‘**운동선수임을 알렸고** 병원에서 금지약물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했지만, 나중에 **병원에서 정확한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지약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경기력 향상을 위함이 아니라 단순한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받았고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KADA로부터 사후 TUE(치료 목적 사용면책) 신청을 권고받았지만, 결국 치료 목적 사용면책 위원회에서 불승인을 받았고 **청문을 통해 제 부주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 위반 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제1호, 제2호
선수의 소변시료에서 검출된 **트리메타지딘은 비특정약물**로, 선수가 비교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 자격정지기간은 4년이고, 선수가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2년입니다.

○ 제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했을까요?

“선수가 병원 진료 과정에서 자신이 선수임을 밝힌 점, 의료진에게 금지약물 확인을 요청한 점, 도핑검사서에서 이석증 약 복용 사실을 기재한 점 등 선수의 부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를 결정합니다.”



진통제로부터 검출된 성분으로 제재받은 사건

적용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
조치결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전국대회의 경기기간 중 선수의 소변시료에서 메틸프레드니솔론(Methylprednisolone)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금지약물 S9에 해당하는 약물로 경기기간 중에 금지됩니다. 위원회는 해당 성분이 선수의 체내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 선수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저는 제 종목에서 유망주로 성장하고 있던 선수입니다. 부상 이후 통증에 시달려왔고 중요 경기 날 아침에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제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별다른 확인 없이 본인이 처방받은 진통제**를 제게 **권유**해서 먹었어요. 저는 경기력 향상을 위함이 아니라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을 먹었고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 위반 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제1호, 제2호선수의 소변시료에서 검출된 메틸프레드니솔론은 특정약물로, 위원회가 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 자격정지기간은 2년이고, 위원회가 고의를 입증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4년입니다.

○ 제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했을까요?

“선수는 실제로 발목 부상을 입어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경기 당일 오전 모친의 권유로 금지약물을 복용한 점, 도핑검사서에 진통제 복용 사실을 기재한 점 등 선수의 부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를 결정합니다.”

◆ 다만, 선수는 해당 제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의료진의 진단서와 감독 등 주변 관계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항소를 요청하였습니다.

○ 항소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했을까요?

“국제스포츠재판소의 판정례에 따라, 선수의 부주의와 과실을 평가하였을 때 제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항소는 기각되어 원판결인 1년 6개월의 자격정지를 결정합니다.”



감기약으로부터 검출된 성분으로 제재받은 사건

적용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
조치결과
자격정지 2년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기간 외 소변검사에서 클렌부테롤(Clenbuterol)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금지약물 S1에 해당하며 경기와 무관하게 항상 금지되는 성분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성분이 선수의 체내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 선수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선수로 활동하다가 이번 10월에 대회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둔 상황이고, 가족들과 감기 기운이 있어 함께 **감기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경기력을 높인다던가 일부러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에요. 제 **부주의는 인정**하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말하고 싶어요.”



※ 위반 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제1호, 제2호 선수의 소변시료에서 검출된 클렌부테롤은 비특정약물로, 선수가 비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 자격정지기간은 4년이고, 선수가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2년입니다.

○ 제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했을까요?

“선수는 도핑검사서 ‘지난 7일간 복용한 약물’ 기재란에 ‘기관지약’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선수가 아무리 은퇴를 앞둔 상황이라도 약 10여 년간 국가대표 등 선수 생활했으며 수많은 검사를 받아왔던 점,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은 선수가 **명백히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2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를 결정합니다.”



선수의 주의사항



▶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1조(선수의 역할과 책임)에 따르면 **어떠한 금지약물도 자신의 체내로 유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수의 의무**이며, 이에 관한 결과는 **선수가 책임진다는 엄격한 책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자신이 선수임을 밝히고 금지약물 처방을 제외하고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 사전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수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이더라도 금지약물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선수가 반드시 질병 치료나 부상회복을 위해 금지약물을 사용(복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 목적사용면책(TUE)제도를 이용하세요.

▶ TUE신청 및 처리절차 (21일 내 심사결과 안내)

- ① KADA 누리집 방문 후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 작성
- ② 진단서 혹은 소견서(최근 3개월), 검사기록 첨부
- ③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TUEC)의 심사
- ④ 국제표준 기준에 따라 승인 혹은 불승인 심사

TUE 신청링크



구분	TUE 승인가준
1	금지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
2	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이 선수의 건강회복 이외의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
3	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 외에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는 경우

※ 응급상황에서의 TUE 신청: 선수가 응급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의료적 처치(치료 또는 수술)를 받게 되는 경우 **사후 TUE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 TUE 신청 또한 승인 또는 불승인될 수 있으며 응급실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응급상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누리집(www.kada.or.kr)을 찾아주세요!

2. 의약품이 아닌 성분 미상의 제품을 섭취하여 발생한 자격정지

사례 2-1

국내 도핑방지규정위반 - 분석사례

성분 출처 미상의 한약 및 음식을 먹어 제재받은 사건

적용규정	조치결과
한국도핑방지규정	자격정지 4년



전국대회의 경기기간 중 선수의 소변시료에서 **19-노르안드로스테론(19-Norandrosterone)**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금지약물 S1에 해당하며 경기와 상관없이 항상 금지되는 성분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성분이 선수의 체내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 선수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저는 전국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을 차지하고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되며 **축망받는 학생 선수**입니다. KADA로부터 양성 반응에 대한 통지서를 받으며, 대회 전에 제가 무엇을 잘못 먹었나... 추적해봤는데 아무래도 **한약이나 소고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한약을 제조해준 건강원에 문의해보니 ‘송치’(암소 배에 든 새끼)가 포함되어 있다 들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부모님이 기력회복에 좋다고 지어주신 한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 위반 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2015) 제2.1항
선수의 소변시료에서 검출된 **19-노르안드로스테론은 비특정약물**로, **선수가 비교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 자격정지기간은 4년이고, 선수가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2년입니다.

○ 제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했을까요?

“선수는 건강원에서 조제한 한약에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섭취한 소고기는 선수에게서 검출된 금지약물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수는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4년의 자격정지**를 결정합니다.”

◆ 다만, 선수는 해당 제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가혹한 처사로 제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요청**하였습니다.



○ 항소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했을까요?

“선수는 **가혹한 처사임을 주장**했지만, 선수는 체내에 금지약물 성분이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이론적인 가능성만 있을 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선수는 결정통지 이후 즉각적*으로 위반 사실을 인정 하였으므로 **감경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인정받지 못하였고 **항소는 기각되어 원판결인 4년의 자격정지**를 결정합니다.”



*즉각적 인정이란, 「한국도핑방지규정」 제73조(결과관리의 합의)에 따라 4년 이상의 자격정지가 부과되는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혐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 위반을 인정하고 도핑방지위원회가 제시한 기간을 수용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단, 청문 및 항소 절차로 인해 소요된 기간은 즉각적 인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2-2

성분 출처 미상의 보충제를 먹어 제재받은 사건

적용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 조치결과 자격정지 6개월



전국대회 경기기간 중 선수의 소변시료에서 **헵타미놀(Heptaminol)**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금지약물 S6에 해당하며 경기기간 중 금지됩니다. 위원회는 해당 성분이 선수의 체내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 선수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며 학업을 이어오는 도중 코치님의 권유로 체육중학교로 진로를 결정했고 선수로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금세 두각을 나타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대회 하루 전 **코치님은 제게 어떤 음료를 권했고 아무 생각 없이 마셨어요.** 그날 경기에서 저는 1등을 했고 자신감을 얻어 다시 열심히 훈련하던 중 KADA로부터 양성 반응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코치님이 주신 음료이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음료에 보충제가 들어간 것조차 몰랐습니다.**”



※ 위반 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제1호, 제2호
선수의 소변시료에서 검출된 **헵타미놀은 특정약물로**, 위원회가 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 자격정지기간은 2년이고, 위원회가 고의를 입증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4년입니다.

○ 제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했을까요?

“선수는 유입경로 등의 답변서 제출 요청에, 신속하게 모든 경위를 밝혔고 코치가 제공한 보충제를 별다른 생각 없이 복용한 점, 미성년자로서 아직 사리 분별에 미숙하여 성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했고, **의도적으로 섭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최종 6개월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를 결정합니다.”



지인의 보충제를 빌려 섭취하여 제재받은 사건

적용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

조치결과
자격정지 2년



전국대회 경기기간 중 선수의 소변시료에서 메틸헥산아민(DMA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금지약물 S6에 해당하며 경기 기간 중 금지됩니다. 위원회는 해당 성분이 선수의 체내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 선수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저는 학창 시절 부상을 당하며 재활과 동시에 보충제를 먹었습니다. 이 보충제를 먹으면 부상이 좀 나아지는 거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합 전에 평소 섭취하던 보충제가 떨어진 것을 알아채고 같이 훈련하던 친구 선수에게 다른 보충제를 빌려 섭취했습니다. 저는 그 보통 원래 먹던 보충제의 성분을 검색해 보며 별다른 이상 없음을 확인했지만, 그날은 훈련 전 시간상의 여유가 없어 친구에게 빌렸던 보충제에 대한 성분은 미처 확인해보지 못했었어요. 스스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위반 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2015) 제2.1항
선수의 소변시료에서 검출된 메틸헥산아민은 특정약물로, 위원회가 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 자격정지기간은 2년이고, 위원회가 고의를 입증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4년입니다.

○ 제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했을까요?

“선수의 체내에서 검출된 성분과 제출한 보충제의 성분이 다르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체내에 어떻게 금지약물이 유입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였던 점,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경각심을 보이지 않은 점, 친구의 보충제를 아무런 의심 없이 섭취한 점 등 선수의 부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위원회는 별도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아 2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를 결정합니다.”



선수의 주의사항



▶ 시료 내 금지약물 검출 또는 금지약물의 사용(사용시도)과 관련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규정 위반이 성립하는 엄격한 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KADA 누리집의 금지약물 검색서비스는 국내 의약품에 대해서만 검색할 수 있으며, 보충제의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내외 보충제의 경우, 성분표기 미흡, 제조 과정 중 교차오염 등의 확인조차 어려운 위험성이 있으므로 도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 해외 보충제(Ja**)의 연도별 성분 변경 예시

Label	Supplement Facts	Supplement Facts	Supplement Facts
Serving Size 1 Scoop (5.55 grams) Servings Per Container: 45 Amount Per Serving % Daily Value* Proprietary Blend 4145 mg * (Arginine Alpha-Ketoglutarate, Creatine Monohydrate, Beta Alanine (Carnosyn®), Caffeine, 1,3-Dimethylamylamine HCl, Schizandra Chimonensis (berry) Extract (Standardized for Schizandrol A)) *Daily Value not established. Other Ingredients: Citric Acid, Natural Flavors, Silicon Dioxide, Acesulfame Potassium, Sucralose, Vegetable Stearate, Beta Carotene (For Color). This Product is Produced in A Facility That Processes Milk And Soy Ingredients Do Not Use If You Are, Or May Become Pregnant.	Serving Size: 1 Scoop (5.1 g) 2 Scoops (10.2 g) Servings Per Container: 45 22.5 Amount per serving %DV %DV Proprietary Blend 5500 mg * 7160 mg * Creatine BioCRE™ Matrix (Creatine Bis Monohydrate, Anhydrous BioCRE™, NO2 (Citoline, Pinus Pinaster (Bark) Extract), Beta Alanine (Carnosyn™), Yohimbe (Pausinystalia Yohimbe) (Bark) Extract, Adaptogen Blend (Schizandra Chimonensis (Fruit) Extract, Rhodiola Rosea (Root) Extract) Caffeine 100 mg * 200 mg * *Daily value not established. Other Ingredients: Malic Acid, Natural & Artificial Flavors, Silicon Dioxide, Sucralose, Citrus Sicca, Beet Root (Color), Acesulfame Potassium, Grape Blue (Color)	Serving Size 1 Scoop (5.55 g) Servings Per Container: 45 Amount per serving % Daily Value Proprietary Blend 4145.00 mg * (Arginine Alpha-Ketoglutarate, Creatine Monohydrate, Beta Alanine (Carnosyn®), Caffeine, 1,3-Dimethylamylamine HCl, Schizandra Chimonensis (berry) Extract (Standardized for Schizandrol A)) *Daily value not established. Other Ingredients: Citric Acid, Natural Flavors, Silicon Dioxide, Acesulfame Potassium, Sucralose, Vegetable Stearate, Beta Carotene (For Color). Manufactured for EPLabs, LLC, Dallas, Texas 75220. Questions, comments or concerns can be directed to our forums at: www.eplabsdirect.com or by phone at: 1-800-899-3967 (9-5 EST Mon-Fri). This product is produced in a facility that processes Milk and Soy ingredients. Do not use if you are, or may become, pregnant.	Serving Size: 1-3 Scoops (5.55g-16.65g) Servings Per Container: 15-45 Amount Per Serving: %DV Proprietary Blend: 4,145mg * 12,435mg * (Arginine Alpha-Ketoglutarate, Creatine Monohydrate, Beta Alanine, Caffeine, 2-Aminoisopropane HCl (Carnosyn®), Yohimbe Extract (dark) (Standardized for Yohimbin Alkaloids), Schizandra Chimonensis (berry) Extract (Standardized for Schizandrol A)) Caffeine 135mg * 405mg * *Daily value not established. Other Ingredients: Citric Acid, Natural Flavors, Silicon Dioxide, Sucralose, Acesulfame Potassium, Beta Carotene, FD&C Red #40.

2012년경 출시
금지약물 성분 포함

2017년경 출시
금지약물 성분 미포함

2020년경 출시
금지약물 성분 포함

2022년경 출시
금지약물 성분 포함

☞ 2016년경 DMAA 성분 사라졌었고, 2022년경 다른 유사 물질로 대신하여 재출시

* 해당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된 자료로 실제 연도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충제의 성분은 계속 바뀌고 국가마다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충제에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

선수가 금지약물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재받은 사건

적용규정	조치결과
한국도핑방지규정	자격정지 4년



위원회는 선수가 에리스로포이에틴(EPO)을 불법으로 구매한 사실을 입수하였습니다. 이는 금지약물 S2에 해당하며 경기와 무관하게 항상 금지되는 성분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선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선수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저는 당시 경기력이 부진했던 차에 근지구력에 좋다는 약물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이곳저곳 수소문을 하게 되었고 한 사이트를 통해 약물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또 도핑을 회피할 수 있는지 몰라서 **약물 디자이너에게 사례비를 주며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스스로 폐기했어요.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경기 결과까지 모두 실효되는 결과 조치는 부당합니다.**”



※ 위반 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제6호(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보유하는 경우) 선수가 소지한 에리스로포이에틴(EPO)은 비특정약물로, 선수가 비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 자격정지기간은 4년이고, 선수가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은 2년입니다.

○ 제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했을까요?

“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금지약물을 구매하여 소지한 점을 등을 인정하고 **고의성이 확인되어 기본제재인 자격정지 4년**을 결정합니다. 또한 경기 결과 실효의 기준은 **‘사용 여부’가 아닌 ‘위반 발생 여부’**이므로 도핑방지규정위반 발생 날부터 선수의 자격정지기간이 개시된 날사이의 모든 **경기 결과는 실효됩니다.**”



선수의 주의사항



▶ 규정에 따른 ‘보유’의 의미

실제 물리적으로 보유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금지약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았거나 혹은 제3자 주소로 발송되었다고 해도 이 자체만으로 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의도하지 않고 금지약물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어떡하나요?

A. 선수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 통지를 받기 전, KADA에 금지약물을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혀 보유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재에 따른 경기결과 실효

「한국도핑방지규정」제76조(시료채취 또는 도핑방지규정위반 후 참가하는 경기에서 획득한 경기결과와 실효)에 따르면, 경기 중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그 경기에서 획득한 경기결과는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또한, 경기기간 중·외를 불문하고 선수의 양성 시료가 채취된 날 또는 기타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한 날부터 (임시)자격정지기간이 개시된 날사이의 획득한 모든 경기 결과(메달, 점수, 상금 등)는 실효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는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 팀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제재받은 사건

적용규정	조치결과
한국도핑방지규정	자격정지 2년



위원회는 자격정지 중인 선수가 팀 훈련에 참여하고 공식경기에도 나타났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하며 위원회는 해당 선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선수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저는 KADA의 자격정지를 받은 이후에 모든 훈련을 거부하며 훈련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경쟁팀에도 제가 앞으로의 선수 생활을 포기했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선수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운동은 하지 않더라도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가벼운 심부름**이라도 하며 따라다녔었습니다. 사소한 활동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몰랐었고 주의하겠습니다.”



※ 위반 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 제79조(자격정지 및 임시자격정지 중 참가금지)
 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를 받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는 허가된 도핑방지교육 또는 재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소속 단체 등의 훈련, 시범경기 혹은 대회 등에 참가한 경우 **동일한 자격정지기간이 원래의 자격정지기간과 시기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연속하여 부과됩니다.**

○ 제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했을까요?

“선수는 자격정지기간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활동에는 **자원봉사자의 행정 활동을 포함하고, 지도자 또는 선수지원 요원으로도 활동하면 안 됩니다.** 짐을 나르는 등의 가벼운 심부름조차 봉사활동에 포함될 수 있고 오랜 선수 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자격정지 2년에 같은 **2년의 추가 제재를 결정합니다.** 이는 기존 자격정지가 끝난 이후 새롭게 기산됩니다.”



선수의 주의사항



▶ 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 기간 중 허가된 도핑방지 교육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경기 또는 활동*에 어떠한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구분	「한국도핑방지규정」 제79조(자격정지 또는 임시자격정지 중 참가금지)
1	세계도핑방지규약 가맹기구 또는 가맹기구의 회원단체, 회원단체 클럽, 그 외 회원단체가 승인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활동
2	프로리그, 국제·국내 경기대회가 주관단체가 승인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3	정부 기관의 자금이 지원되는 전문체육 또는 전국단위 스포츠 활동

* '활동'에는 자신이 소속된 경기단체 또는 경기단체 회원이나 정부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클럽(비가맹단체 포함)에서 주관하는 전지훈련, 시범경기 또는 훈련 및 자원봉사자의 행정 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 KADA는 매년 경기단체와 협조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자격정지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격정지 중인 선수는 추가적인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도핑방지규정위반 의심 사례 제보 창구

- 1 누리집 도핑제보시스템 ☞ <https://kada-ad.or.kr/>
- 2 카카오톡 도핑제보 채널 ☞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제보” 검색
- 3 전자우편 ☞ reportdoping@kada.or.kr
- 4 유선전화 ☞ 02-2045-9882 / 9884

카카오톡 도핑제보



지도자가 미성년 선수에게 보충제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재받은 사건

적용규정	조치결과
한국도핑방지규정	자격정지 3년



위원회는 미성년 선수의 도핑방지규정위반 건을 진행하며 선수 체내 유입경로를 확인하는 도중 **지도자의 금지약물 복용 권유에 대한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지도자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 선수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저는 선수 출신으로 10여 년간 지도자 생활을 한 지도자입니다. 수많은 선수들을 지도하며 많은 수상과 업적을 이뤄냈어요. 근데 지도받던 한 선수가 좋은 기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날만 되면 **긴장을 해서 떠는 모습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 긴장감 해소에 도움이 될만한 **소량의 보충제를 얻었고 음료수에 타서 먹게 했어요.** 모든 게 제 **무지함으로 벌어진 일**이고 선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었을 겁니다.저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깊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 ※ 적용 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제8호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경기기간 중/외에 있는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시도) 기타관계자(지도자 등)가 경기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중 특정 금지약물 투여하였기 때문에 4년에서 최대 영구 자격정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 제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했을까요?

“지도자는 10여 년간 별다른 위반 사실 없이 우수한 공적을 쌓아왔던 점, 선수가 지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미성년 선수의 시료에서 특정약물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청문없는 결정을 수용하고 20일 이내 혐의 통지 및 제재를 인정하였기에 3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를 결정**합니다.”



《《 선수 답변
》》 혐의통지



선수의 주의사항



- ▶ 「한국도핑방지규정」제66조3호에 따라 **보호 대상자가 연루된 위반은 특히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하며, **특정약물 이외의 위반을 선수지원요원이 범한 경우**, 해당 선수지원요원은 **영구 자격정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제13.7호 또는 제13.8호의 위반이 국내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 「한국도핑방지규정」제73조1항에 따라 4년 이상의 자격정지가 부과되는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 위반을 인정하고 도핑방지위원회가 제시한 자격정지기간을 수용하는 경우, **자격정지기간을 1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선수와 연관되어 있거나, 선수의 도핑에 관여 및 은폐하는 일에 연루된 자에게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보다 더 엄격한 조치가 부과됩니다.”

오염된 음식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어 제재받은 승마 선수

발생국가	조치결과
멕시코	자격정지 1년 4개월



국제승마연맹(FEI)은 2019년 6월 4일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를 통해 선수의 소변시료에서 클렌부테롤 (Clenbuterol)검출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금지약물 S1에 해당하며 경기와 무관하게 항상 금지되는 성분입니다. 이에 선수는 멕시코승마연맹을 통해 청문 희망 의사를 전달했고 당사자와 증인 및 국제승마연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문이 개최되었습니다.

○ 선수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 제게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것은 오로지 오염된 고기를 섭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멕시코는 오염된 육류로 인해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멕시코시티 소재의 국가승마센터에서 훈련하며 같이 식사했던 동료 3명에게도 동일한 양성 반응을 보였어요.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육류 위주의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문제를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저는 경기력 향상의 목적도 아니었고 은폐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

○ 국제승마연맹은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했을까요?

“ 전문가를 통해 선수가 섭취한 멕시코산 육류에서 클렌부테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선수는 현지에서 소와 돼지 고기를 많이 섭취했다는 점, 승마 센터 시설책임자 등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선수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멕시코에서 클렌부테롤이 들어간 오염된 육류가 많다는 점은 만연한 사실이고 선수 스스로 강도 높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선수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분명히 존재하며 1년 4개월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를 결정합니다. ”



선수의 주의사항



▶ 특정 몇몇 국가(예: 멕시코, 중국, 과테말라 등)에서 가축 성장 촉진제로 금지약물 국제표준에 포함되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섭취한 선수의 소변시료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서도 **오염된 육류에서 금지약물 성분(클렌부테롤, 락토파민 등)이 검출되는 경우**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과학·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을 구성하여 해당 성분이 포함된 육류를 섭취하였을 때의 위험성과 소변시료에서 이를 구별하는 방법 등 무고한 선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WADA는 클렌부테롤, 락토파민 등 몇 가지 성분에 대해 소변시료에서 검출된 농도가 **5ng/mL 이하의 경우**에는 분석실험실에서 비정형분석결과(ATF)로 구분하고, 국가도핑방지기구(NADO)는 선수의 금지약물 유입경로 증빙 제출 등 가능한 한 빠르게 추가 조사를 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처럼 선수는 특정 국가에서 훈련 등 체류하는 경우, 육류 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누리집(<https://www.wada-ama.org/>)을 찾아주세요!

장기보관 시료 재분석으로 금지약물이 검출되어 제재를 받은 바이애슬론 선수

발생국가	조치결과
슬로베니아	올림픽 경기 결과 실효



2010년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경기 며칠 전 선수는 3개의 소변샘플을 제공하였고 당시 연구소의 분석된 결과에서는 금지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기간에 수집된 샘플을 추가 분석하기로 하며 2017년과 2010년경 당시 식별할 수 없던 개선된 분석 방법으로 수행되었고, 분석 결과 성장호르몬(hGH)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금지약물 S2에 해당하며 경기와 무관하게 항상 금지되는 성분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해당 성분이 선수의 체내에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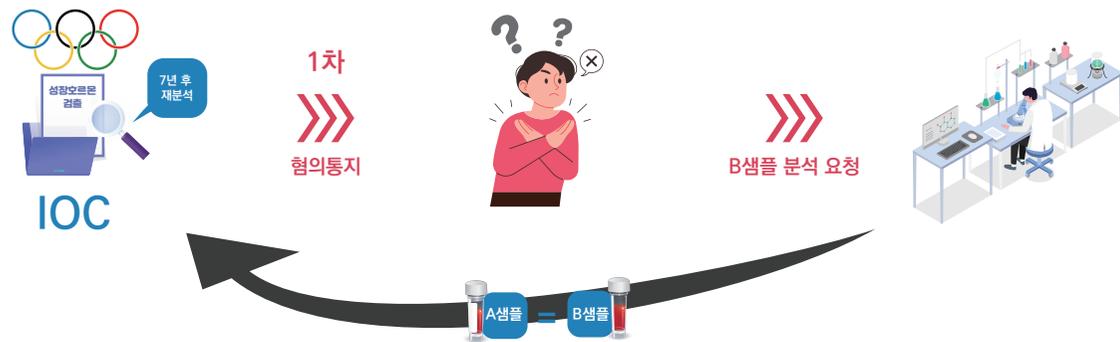
○ 선수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이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B샘플 분석하기를 희망합니다.”

◆ 선수 요청에 따라 B샘플은 스위스 로잔 연구소에서 독립적인 증인의 입회하에 진행되었고 A샘플과 동일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여 결정했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당시 선수의 소변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수는 B샘플 분석을 요청했지만, 그 결과는 동일했고 스스로 모든 것을 수용하였습니다. 선수는 해당 성분이 어떻게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었는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발생한 4개의 개인 종목 기록과 단체계주를 포함한 선수의 모든 결과를 실효합니다.”



선수의 주의사항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51조(B시료 분석) 관련 선수 또는 선수대리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B시료 분석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국가도핑방지위원회 절차상의 필요에 따라 B시료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B시료 분석결과에서 A시료와 같이 비정상분석결과가 확인된 경우

· (A=B)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선수와 경기단체에 통지하고 비정상분석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됩니다.

- B시료 분석결과에서 A시료와 같이 비정상분석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A≠B) 전체 검사는 음성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는 선수와 경기단체, 국제 연맹 등에 통지됩니다. 또한, A시료 비정상분석결과를 근거로 한 혐의 통지는 철회되고 이와 관련한 결과관리 절차가 일체 중단됩니다.

▶ 치밀해지고 지능적인 도핑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KADA 또한, 시료 장기보관 및 재분석 전략을 수립하여 강화된 도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로부터 채취한 시료는 최대 10년간 보관되며 이 시료에 대해 종목별 위험도 평가 등을 반영하여 전략적인 재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참가하는 선수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결국 도핑에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도핑없는 깨끗한 스포츠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핑검사를 거부하여 제재받은 수영 선수

발생국가	조치결과
중국	자격정지 4년 3개월



2018년 9월 4일 국제수영연맹(FINA) 승인을 받은 시료채취기관(IDTM) 검사관 등 3명이 선수의 소변·혈액시료 채취를 위해 클럽하우스에 방문하였습니다. 선수는 혈액시료 채취 이후 도핑검사관과 샤프롱에게 **자격 증명을 요청하는 등 논쟁이** 이어지며 추가 소변검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고 조치에 그쳤지만**(2019년 1월 3일),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이를 국제스포츠중재소에 **항소**(2019년 2월 14일)했습니다.

○ **선수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도핑검사관이 휴대폰으로 제시하는 문서에는 함께 온 **샤프롱의 신원확인이 어려웠고** 샤프롱은 휴대전화로 제 허락 없이 몰래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의심할만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어머니는 샤프롱에게 약 10장의 사진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파파라치까지는 아니었지만 성가신 팬처럼 행동하며 제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저는 보다 적법한 증명서를 가진 도핑검사관과 샤프롱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됐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전달받았어요. 이 **검사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제공한 혈액 시료를 망치로 부수고 도핑검사서를 찢어버렸습니다.**”

○ **국제수영연맹은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도핑검사관과 혈액채취요원 그리고 샤프롱은 각각의 개별 위임서를 연맹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IDTM 신분증도 소지하여야 했지만, 도핑검사관 1명 외 인원들은 명확한 신분증명서가 없었습니다. 이에 **검사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되며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IDTM에서 발급한 위임장은 도핑검사관 뿐 아니라 나머지 지원 요원도 포함되는 **집합적 단위의 개념이며 권한과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한 채취한 혈액샘플을 훼손하고 도핑검사서를 찢은 행위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IDTM에 도핑검사관 위임한다는 국제수영연맹 명의의 위임서와 도핑검사관의 증명서면 검사 시행에 적법하며, 선수가 7년간 180번 받았던 검사 중 IDTM의 검사가 60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혈액채취 시 본건의 **검사서 말미에 모든 절차를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것에 서명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샤프롱이 선수의 팬이라고 촬영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은 선수가 검사 절차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될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신체, 위생, 도덕적 문제가 없으면 도핑검사에는 응해야 합니다**. 즉, 도핑검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두 번째 제재임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8년**을 결정합니다.”(2020년 2월)

◆ 다만, 선수는 해당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위스연방법원을 찾아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어떻게 재판단했을까요?**

“「세계도핑방지규약」제2.5조(부정행위)에 대해 선수는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지 않았고 검사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비롯된 행동이었으나, 잠재적 결과에 대한 **위험을 명백하게 무시했고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3조(검사 불이행)에 대해 규약에 명시된 **‘예외적인 상황’이 참작**되어 부정행위에 대한 상황은 감경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최종 4년 3개월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를 결정합니다.”(2021년 6월)



선수의 주의사항



▶ KADA는 도핑관리 권한 하에 있는 등록선수를 대상으로 도핑검사를 시행합니다. 도핑검사관은 불시에 선수를 찾아가 검사를 시행하지만, 검사 시 검사권한서와 도핑검사관증을 선수에게 제시하기에, 선수는 꼭 이를 확인한 후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상황에서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제3호에 따라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기본 자격정지기간은 2년에서 4년에 해당합니다.

검사 통지 이후부터 검사 종료 시까지 선수는 도핑검사관(또는 샤프롱) 통제하에 도핑관리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만, 언론 인터뷰, 쿨다운, 복장 정비, 시상식, 의료적 조치 등은 선수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핑검사관의 승인과 관찰하에 도핑관리실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선수의 권리	a. 1명의 대리인과 (필요시) 1명의 통역을 대동할 권리 b. 시료채취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리 c. 합당한 사유*로 도핑관리실 도착 연기 요청 권리 d. 미성년/장애인 선수에 대한 절차 조정 요청 권리
선수의 의무	a. 선수는 도핑관리실에 도착할 때까지 시료채취요원이 동반하고, 직접적인 관찰하에 머물러야 함 b. 시료가 제공되는 동안에 시료채취요원에 의해 관찰되며, 통지 후 첫 번째 시료를 제공해야 함 c.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d. 시료채취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e. 합당한 사유*로 도핑검사관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즉시 도핑관리실에 도착

※ 합당한 사유란?

<경기기간 중>

시상식 참석	훈련이나 정리운동	사진이 있는 신분증 가져오기
언론과의 인터뷰	필요한 의료조치	옷 갈아입기
후속 경기참가	대리인 또는 통역인 찾기	기타 정당한 예외적인 상황

<경기기간 외>

옷 갈아입기	필요한 의료조치	대리인 또는 통역인 찾기
사진이 있는 신분증 가져오기	옷 갈아입기	기타 정당한 예외적인 상황

단, 시료채취요원 혹은 샤프롱이 동반하여 직접적인 관찰이 가능해야 합니다.

Q. 제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 A. ① 선수 본인 ② 국제경기연맹(IF)
 ③ 국가도핑방지기구(NADO) ④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해당됩니다.



동료선수의 녹취로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받은 육상선수

발생국가	조치결과
러시아	자격정지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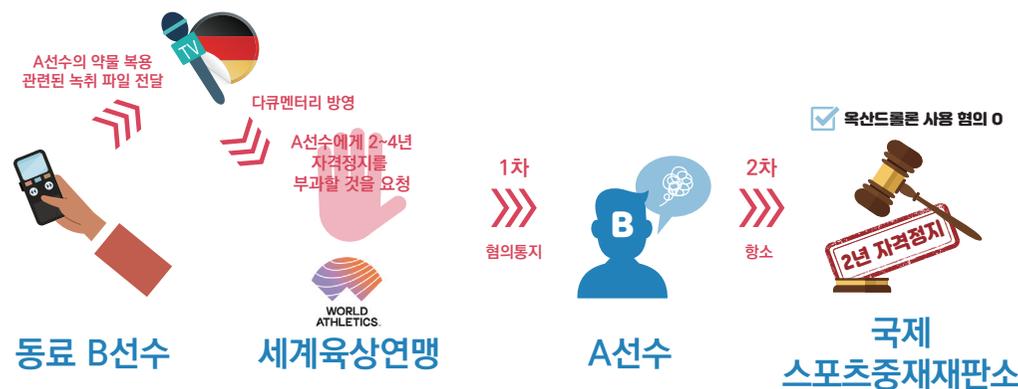
2014년 12월 3일 러시아의 육상 장거리 A선수가 금지약물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러시아 선수들과 선수지원인력의 대화가 담겨있었는데, A선수가 2012~14년에 걸쳐 옥산드롤론, 펩티데이스 및 EPO를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 B선수는 해당 내용을 녹취하여 독일 기자에게 전달했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세계육상연맹(WA)은 즉시 러시아 도핑방지기구에 A선수의 임시자격정지 통보를 요청했습니다. A선수는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국제스포츠중재소에서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 동료 B 선수는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저는 러시아의 육상선수로서 A선수를 2009년 선수권대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특히 2014년 10월 21일 경에는 같이 몸을 푸는 등 운동을 같이했는데 그때 저는 A선수에게 옥산드롤론 10알 섭취하는 것과 준비 방법을 들어요. 또한 펩티데이스를 섭취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내용과 2012년에 EPO를 먹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제 휴대폰에 녹음해뒀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저희 코치님에게 옥산드롤론 알약을 받으며 도핑검사 시 양성반응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언제 먹어야 한다고 들었고 이 역시 제 휴대폰에 녹음했었습니다.”

○ 세계육상연맹은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A선수는 2012년에 EPO를 사용했고 2013년에는 펩티데이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옥산드롤론의 금지약물 사용과 도핑 회피를 준비했다는 내용이 녹취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유럽 챔피언십을 위해 코치가 선수들에게 EPO, 성장호르몬 등 여러 금지약물을 사용하도록 제공했다고 여길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A선수에게 자격정지기간 2년에서 4년 사이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A 선수는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우선 저는 B선수와 어떤 관계도 없고, 금지약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관심을 가지기에 하지 말라는 경각심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B선수가 제출한 녹취록의 대화 내용은 짧은 나레이션 형식입니다. 해당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정확성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영어로 번역된 기록물은 일부 고립된 단어만 듣고 오인식할 수 있고 잘 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어만 듣고 금지약물 사용 등의 전후 사정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코치가 다른 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선수가 그 약물을 복용함이 틀림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외에도 저를 고발한 B선수는 러시아육상연맹에서 자격 박탈당할 정도로 매우 낮은 신뢰도를 가졌습니다. 이는 본인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녀의 증거만을 토대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역시, 법률적 절차에 증거로써 활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차례도 도핑검사에 적발된 적이 없으며 소재지 정보 제출 등에도 항상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A선수의 EPO와 펩티데이스 등 금지약물에 대해서는 시료를 통한 금지약물 검출 사실이 없고 녹취록 대화 중에서도 ‘EPO’ 말고 ‘EKO’, ‘ETO’ 등 충분히 유사한 단어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시점 및 방법에 대한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해당 금지약물 사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A선수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중,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알약을 먹어야 하고 체내에서 완전히 소멸하는 시간을 명확하게 말한 부분 등에서 2014년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옥산드롤론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2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를 결정합니다.”



소재지정보 불이행에 대해 시스템 및 도핑검사관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제재받은 장애인테니스 선수

발생국가	조치결과
프랑스	자격정지 1년 3개월



선수는 국제테니스연맹으로부터 'IRTP(국제검사대상명부)'에 선정되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선수는 분기별로 ADAMS(도핑행정관리시스템)에 선수의 소재지를 제출했으나, 세 번의 불시 검사에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실패) 2021년 1월 2일, 도핑검사관이 선수가 제공한 주소로 방문하였고 여러 번 초인종을 눌렀으나 특정 60분 동안 인터폰 벨소리에 응답하지 않았고, 대화할 주변인도 없었으며 **3차례의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는 코스타리카에서 휴가 중이었으며 자신의 위치를 업데이트하려 했지만, 해당 위치에서 자신의 신호가 잡히지 않아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실패) 2021년 7월 26일, 도핑검사관은 선수가 제공한 주소로 방문했고 첫 번째 문을 통과하여 두 번째 문의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으나, 마찬가지로 특정 60분 동안 응답하지 않았고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는 본인이 소재지정보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고 부주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 실패) 2021년 9월 27일, 도핑검사관이 선수가 제공한 주소로 방문했고 열려있던 첫 번째 문을 통과하여 두 번째 문의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으나, 마찬가지로 특정 60분 동안 응답하지 않았고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는 아내와 여행 후 9월 27일 자신의 아파트 침실에서 문을 닫고 있었고 이로 인해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 국제테니스연맹은 선수에게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통지를 보냈고, 선수는 두 번째 테스트만 인정하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거부하며 스포츠중재소(Sport Resolutions)에서 청문이 진행되었습니다.

○ 국제테니스연맹은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 선수는 12개월 동안 3번의 ‘검사 불이행’을 기록되었습니다. 도핑 검사관도 당시 상황들에서 선수를 찾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선수는 최소한의 부주의로 인한 행동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핑방지규정위반이며 2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 A 선수는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 첫 번째 테스트와 관련하여, 휴가 중이었던 장소에서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적은 처음인데 저는 절대 부주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ADAMS에서 타지에 있던 저를 차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와 관련하여 최근 저희 아파트에서 큰 파티를 하느라 인터폰 볼륨을 낮춰뒀었고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도핑 검사관은 저를 찾기 위해 다른 세입자의 인터폰을 눌러보거나 노크했어야죠. 저는 검사관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검사관이 합당한 노력을 했더라도, 저는 인터폰에 결함이 있었고 볼륨이 평소보다 작던 걸 몰랐기 때문에 제 과실로 간주되서는 안된다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상황을 회피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

○ 스포츠중재소(Sport Resolutions)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 첫 번째 테스트를 실패한 것에 대해, 선수는 특정 60분 동안 해당 장소에 없던 점은 선수의 부주의에 해당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시스템에 소재지 정보 제출에 실패할 경우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는 그날 본인이 해당 장소에 없을 것을 알고 있었고 변경된 소재지정보를 더 일찍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

세 번째 테스트를 실패한 것에 대해, 도핑검사는 불시에 진행되며 사전 미통지 원칙입니다. 선수는 제출한 소재지 정보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고 이 역시 선수의 의무입니다. 또한 도핑 검사관도 선수 아파트 홀에 머무르며 선수의 아파트에 불빛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선수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제한된 접근 위치에서 선수 이외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을 의무가 없는 점도 인정됩니다.

다만, 선수는 진실을 증언하며 정직하게 답변하려 한 점, 선수는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깨닫는 즉시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를 결정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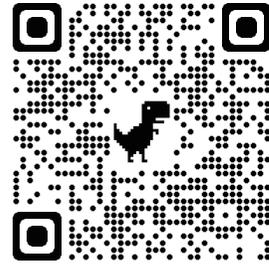


선수의 주의사항



▶ KADA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제4.8조에 따라 매년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검사대상명부(RTP) 선수를 선정합니다. 이에 RTP 포함통지를 받은 선수는 본인의 소재지정보를 KADA에 제출해야 하며, 12개월 동안 3회의 소재지정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지정보 제출방법



▶ 소재지정보 불이행 종류:

제출불이행	검사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이유 없이 KADA가 지정한 마감기한 내에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매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특정 60분 단위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 검사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소재지정보를 제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이유 없이 선수가 지정한 소재지에서 특정 60분 단위시간 동안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 다만, 국제경기연맹(IF) RTP(Registered Testing Pool)에 포함된 선수에 한해서는 국제경기연맹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TP선수는 소재지정보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정확한 소재지정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자신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1. 주요 금지약물 부작용

금지약물 기준	
①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	
③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S1. 동화작용제(아나볼릭제제)	
동화작용제는 인체 내의 동화작용에 도움을 주는 약물을 말하며, 근육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많은 선수들이 유혹을 받은 약물임	
대표적인 약물	testosterone(테스토스테론), stanozolol(스타노졸롤), clenbuterol(클렌부테롤), drostanolone(디로스타놀론) 등
주요 부작용	간질환(간염, 간암 등) 위험 증가, 심장질환 위험 증가, 고혈압, 심한 여드름, 공격성향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지며 심한 경우 돌연사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임 여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다모증(얼굴 등 전신), 월경주기 교란, 탈모, 음핵비대, 탄살, 목소리 남성화 등 남성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고환위축, 정자수감소, 무정자증, 발기부전 등 성기능 장애, 전립선비대, 유방비대증, 탈모 등

S2. 펩티드호르몬, 성장인자, 관련약물 및 유사체	
인체의 다양한 조절기능에 관여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호르몬 및 관련 약물 분류됨	
대표적인 약물	성장호르몬(hGH), 에리스로포이에틴(EPO) 등
주요 부작용	성장호르몬: 신체 특정부분 기형화, 당뇨, 관절약화, 심장질환 에리스로포이에틴(EPO): 고혈압, 뇌졸중, 혈전으로 인한 혈관 폐색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S3. 베타-2 작용제	
교감신경의 베타수용체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약물로, 기관지 확장에 효과적임	
대표적인 약물	salbutamol(살부타몰), formoterol(포르모테롤), higenamine(히겐아민) 등
주요 부작용	심계항진(두근거림), 두통, 부정맥, 근육경련, 오심, 신경예민, 떨림증상

S4.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인위적으로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를 투여하여 특정호르몬의 체내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	
대표적인 약물	Insulin(인슐린), anastrozole(아나스트로졸), trimetazidine(트리메타지딘) 등
주요 부작용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저혈당 증상

S5.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약물로 체급조절, 체중감량 등에 남용될 수 있는 약물	
대표적인 약물	furosemide(푸로세미드), spironolactone(스피로노락톤), canrenone(칸레논), furosemide(푸로세마이드) 등
주요 부작용	심각한 저혈압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심각한 탈수증상(사망에 이를 수 있음), 실신, 근육 경련 및 근육통, 혼돈

S6. 흥분제	
인위적으로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를 투여하여 특정호르몬의 체내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	
대표적인 약물	Ephedrine(에페드린), Cathine(카틴), Phentermine(펜터민) 등
주요 부작용	심장마비, 뇌졸중, 부정맥의 위험을 높이며 불면증, 불안, 급격한 체중감소, 의존 및 중독 증상, 탈수, 떨림, 심장박동 및 혈압 상승의 부작용

S7. 마약	
신경인성 통증 및 암성 통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며,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는 약물임	
대표적인 약물	morphine(모르핀), phentermine(펜터민), fentanyl(펜타닐), oxandrolone(옥산드롤론) 등
주요 부작용	강력한 중독증상을 일으키며, 불안, 환각, 정신착란 등을 일으킬 수 있음

S8. 카나비노이드(마리화나)	
대마추출물로서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나비노이드는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도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물	
대표적인 약물	칸나비디올(CBD), 칸나비놀(CBN), 테트로하이드로칸나비놀(THC) 등
주요 부작용	호흡장애, 인지장애, 의존성, 정신병 장애, 환각장애 등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신피질 호르몬으로 항염증 작용을 할 수 있는 약물	
대표적인 약물	prednisolone(프레드니솔론), triamcinolone(트리암시놀론) 등
주요 부작용	고혈압,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 혈전장애, 내분비 장애, 혈당증가, 근육감소, 백내장, 녹내장, 궤양, 골절

P1. 베타차단제	
교감신경의 베타수용체를 차단하여 심장박동수를 감소시키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약물이다. 특정종목(사격, 양궁 등)에서만 금지	
대표적인 약물	propranolol(프로프라놀롤), carteolol(카르테올롤), nadolol(나돌롤) 등
주요 부작용	치명적인 기관지 발작(사망에 이를 수 있음), 저혈압, 심장질환(부정맥, 심부전), 집중력저하, 수면장애, 성기능장애, 만성피로

2. 약물 복용 전 주의사항

모든 약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감기약 등에도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선수는 본인의 체내로 금지약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도핑방지규약에서는 어떠한 금지약물도 자신의 체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각 개인의 의무이며,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선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엄격한 책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 병/의원 방문 시, **선수는 본인이 운동선수이며 언제든지 도핑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을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선수분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이 도핑 전문가가 아닐 수 있으므로 처방 약물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금지약물 국제표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필요시 수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 전 항상 재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도 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사에게 조연을 구하고 **본인이 최종적으로 금지약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금지약물을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 당뇨, 천식, 고혈압, ADHD, 호흡기감염(감기), 면역질환, 염증성장질환, 신경손상 혹은 암으로 인한 심한 통증 조절이 필요한 경우, 수면장애, 근육 손상 등 다양한 경우에 금지약물이 사용될 가능성이 큼니다. **질병의 경증을 떠나 항상 본인이 사용하려는 약물이 금지되는 약물인지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 기타 주의사항

- 흔히 생각하는 구강투약, 근육주사, 정맥주사, 좌약 등의 방법 이외에도 연고제를 피부에 도포 하거나 파스 또는 패치를 붙이는 방법, 설하제를 녹여 먹는 방법 등 체내로 약물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체내에 금지약물이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